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12.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12.

다. 상 정 일 자 : 2002. 12. 10

(제1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구 복 규

나. 제정사유

- 화순읍 대리 일원에 조성중인 공설운동장은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준공과 때를 같이하여 공설운동장내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다. 주요내용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가행사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사용을 변경 취소할 수 있음, 단 시설물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을 변경 취소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함 단, 군수는 시설의 개보수,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군수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함

- 군수는 잔디, 트랙 등 체육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음
-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국, 도, 군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혜자 어린이 경로대상 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록된 체육동호인인 단체,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함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금액의 50%,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전액, 천재지변과 우천,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 사용자가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짐
-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 또는 대부 운영하게 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조성중인 공설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
- 본 조례안중 가장 논란이 있는 부분은 주경기장필드 및 육상트랙 사용료 부

분으로서 시설관리 측면과 아울러 주민이 저렴하게 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사용료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주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5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의 고지 조항에 따라, 주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명확히 고지하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무료이용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심의 및 입법예고 등 제정절차상의 하자나 사위관련 법규의 지속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수정의결”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첨 부 :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신 · 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6. -생략-</p> <p>7. -생략-</p> <p>8. -생략-</p> <p>9. -생략-</p> <p>10.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4. -삭제-</p> <p>5. 제4호로 함.</p> <p>6. -삭제-</p> <p>7. -삭제-</p> <p>8. -삭제-</p> <p>9. -삭제-</p> <p>10. 제5호로 함.</p>
<p>제3조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3조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제3항으로 함.</p> <p>⑤ 제4항으로 함.</p>
<p>제9조③야간사용은 <u>중요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연습 이용시간은 주간 종료시까지로 한다.</u></p>	<p>제9조③야간 사용은 <u>중요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한다.</u></p>
<p>제13조② 생략</p>	<p>제13조② 삭제</p>

<원 안>

[별표1]

사 용 료

가. 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 사용료

시설별	구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체육외행사	
			평 일	토· 공휴일	평 일	토· 공휴일
주 경기장 필드	조 간		15,000	19,000	27,000	30,000
	주 간		50,000	63,000	92,000	103,000
	야 간		22,000	28,000	41,000	46,000
주 경기장 육상 트랙	조 간		4,000	5,000	9,000	14,000
	주 간		13,000	19,000	33,000	47,000
	야 간		6,000	8,000	14,000	21,000
테니스코트 (1코트당)	조 간		2,500	3,500		
	주 간		8,000	12,000		
	야 간		3,000	5,000		

나. 이용 및 연습 기본사용료

구 분	기 준	개 인			단 체			비 고
		일반	학생 군인	경 노 어린이	일반	학생 군인	경 노 어린이	
주 경기장 육상 트랙	1회2시간	700	500	300	400	300	200	.월회원은 1일사 용료× 30× 100분 의 50%
주 경기장 필드	1회2시간	700	500	300	400	300	200	
테니스코트 (1코트당)	1회2시간	1,500	1,100	800	800	700	500	.분기회원은 1일 사용료× 30× 100 분의 40%적용

다. 기자재등 부속시설사용료

종 별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방송시설 (엠프및마이크등)	주경기장		1일1회	10,000	
	테니스코트		1일1회	5,000	
조 영	주경기장			실제사용관허요금+ (기본사용료× 1/30 × 사용일	
	테니스코트				

라. 방송중계료

구 분	중계방송		녹화방송		비 고
	T V	라디오	T V	라디오	
금 액	15,000	10,000	7,500	5,000	주최측부담

마. 상행위사용료

종 별	금 액			비 고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 촬영	-주간 20,000 -야간 30,000			
2. 선전, 광고, 게시등	구분	기준	광고료	
	대형(30M× 1.3M미만)	7일	30,000	
	중형(20M× 1.3M미만)	7일	20,000	
	소형(10M× 1.3M미만)	7일	10,000	
3. 에드벌룬등	1개 1일 2,000			
4. 프로그램등 선전책자판매	총판매금액의 10%			

<수 정>

[별표1]

사 용 료

가. 일반 및 체육행사 전용기본 사용료

시설별 / 구분	사용시간	체육행사		체육외행사	
		평 일	토· 공휴일	평 일	토· 공휴일
주 경기장 필드	조 간	15,000	19,000	27,000	30,000
	주 간	50,000	63,000	92,000	103,000
	야 간	22,000	28,000	41,000	46,000
주 경기장 육상 트랙	조 간	4,000	5,000	9,000	14,000
	주 간	13,000	19,000	33,000	47,000
	야 간	6,000	8,000	14,000	21,000
테니스코트 (1코트당)	조 간	2,500	3,500		
	주 간	8,000	12,000		
	야 간	3,000	5,000		

나. 기자재등 부속시설사용료

종 별 / 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방송시설 (엠프및마이크등)	주경기장	1일1회	1일 1회 10,000	
	테니스코트	1일1회	1일 1회 5,000	
조 명	주경기장		실제사용관허요금+ (기본사용료× 1/30 × 사용일	
	테니스코트			

다. 방송중계료

구분	중계방송		녹화방송		비고
	TV	라디오	TV	라디오	
금액	15,000	10,000	7,500	5,000	주최측부담

마. 상행위사용료

종별	금액			비고
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 촬영	-주간 20,000 -야간 30,000			
2. 선전, 광고, 게시등	구분	기준	광고료	
	대형(30M× 1.3M미만)	행사기간	30,000	
	중형(20M× 1.3M미만)		20,000	
	소형(10M× 1.3M미만)		10,000	
3. 에드벌론등	1개 1일 2,000			
4. 프로그램등 선전책자판매	총판매금액의 10%			